

2020 상반기 (온라인)사업보고서

누가! 언제! 어디서! 무엇을! 어떻게! 왜!

01. 누가

- 2019년 12월 말 기준 사회적기업
- 2007년 제1차 ~ 2019년 제6차 인증 사회적기업
- * 2020년 4월 말 제출시

02. 언제

- 2020년 4월 30일까지

03. 어디서

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
(<http://www.seis.or.kr/>)



[사업보고서/경영공시]



[사업보고서 등록]

04. 무엇을

✓ (작성된)사업보고서
STEP 1~9 에 작성

✓ 첨부서류
STEP 10. 업로드

1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2. 19년 재무제표 (부속명세서포함) 사본 1부
※ 반드시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공증된 재무제표 제출
3. 2020년도 사업계획서 1부
※ 사업계획서 양식 샘플 참고
4. 정관 사본 1부
(정관 변경 시에 한함)
5. 본점 및 지점 현황 1부
(지점이 있는 경우)
※ 서식 3 제출
6. 대면실사확인증 사본 1부

05. 어떻게

작성

- 항목(Step) 1 ~ 10 작성
- *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 확인
- * 작성 기준 월, 단위 확인

1. 온라인 작성 완료
- 💡 (임시저장) 버튼 클릭!
2. 유선실사 일정 확인
3. 실사 확인서류 준비

유선실사

1. 중간지원기관 담당자 전화방식
2. 실사 확인서류 요청 (이메일)
3. 검토 후 수정보완 요청
4. 수정보완 사항 확인 후 확인증 발급

1. 사업보고서, 서류 수정보완
2. 실사 확인증 첨부

제출

- * 제출버튼 클릭!
- 제출 완료!

✓ 확인서류
유선실사시 확인서류,
시스템 제출(업로드) 불필요

1. 2019년 12월 급여대장
: 임금확인용
2. 출근카드(출근기록부)
(없는 경우 근로계약서)
: 근로시간 확인용
3. 사회서비스제공 증빙서류
(19년 1월 ~ 12월 중 실적)
: 사회서비스제공 실적 확인용
※ 사회서비스제공형,
혼합형 사회적기업 필수
※ 사회서비스제공 확인서 등
4. 회의록
(19년 1월 ~ 12월 중)
: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운영실적
확인용

06. 왜

• 개별 사회적기업이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, 사회적기업 전체의 사회적·경제적 성과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

* 근거규정 :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,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

•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작성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* 근거규정 :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3조

2020 자율경영공시

누가! 언제! 어디서! 무엇을! 어떻게! 왜!



01. 누가

•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중 희망기업

*2020년 4월 제출용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의 기업만 작성 가능



02. 언제

•모집일정

2020년 4월 1일 (수)

~

2020년 5월 29일 (금)



03. 어디서

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
(<http://www.seis.or.kr/>)



[사업보고서/경영공시]



[경영공시 목록]



[경영공시 신청]



04. 무엇을

•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 및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정보



통합정보시스템의 기업정보관리, 사업보고서 데이터와 자동 연계



기업이 직접 입력하는 항목 (사회적기업가 인사말, 미션과 비전, 주요 사업내용, 주요 연혁)에 한하여 선택 작성 (필수작성X)

*단, 재무제표 및 사업계획서는 첨부



05. 어떻게

작성

* 항목별 작성

*자율경영공시 작성 매뉴얼 확인

*작성 기준 월, 단위 확인

-작성시점: 2019년 12월 말 기준

*해당 페이지 기재가 끝날 때마다 "임시저장" 버튼 클릭!

제출

1. 작성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"제출" 버튼 클릭!!



06. 왜

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, 사회적기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제도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.



혜택:

고용노동부 재정지원사업 (일자리 창출 재심사)

-지원시 가점 부여

-진흥원 내부 지원사업

참여시 혜택 부여

-참여기업 대상 확인증 발급